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최 남 숙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연구

2009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정 혜 은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연구

최 남 숙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정 혜 은

인 준 서

정혜은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최근 우리나라는 국제결혼으로 출현한 결혼이민자 가정의 급증으로 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진입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처한 특수한 환경으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들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지원이 부족하다. 더욱이 그들의 사회적 인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에서 국제결혼으로 정착하게 된 결혼이민자들에 대하여 우리사회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연구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을 둔다.

행정안전부의 2008년 외국인주민실태조사에 따르면 2008년 5월 외국인 주민은 891,341명으로 주민등록인구의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7년 722,686명보다 23.3% 증가하는 등 다문화사회로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2008.07, 행정안전부).

하지만 국제결혼이라는 현상이 두드러진 것은 약 10여년에 불과하고 결혼이민자들에게만 초점을 맞추다보니 새로운 변화를 한국인과 한국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는 또 다른 문제는 상대적으로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고(황정미 등, 2007),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연구가 새로운 사회적 변화에 비해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일반인들의 의식이 그들의 주변이나 혹은 가족 등에 결혼이민자의 유무 등에 따라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그에 따라 정책수립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로 필요 하는지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 남녀 297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 자료는 빈도, 백분율, 평균, 분산분석(one-way ANOVA),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으며, 이상의 자료는 SPSS PC Program(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Win Ver 1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이 어떠하였는가에 대한 결과로 결혼이민자가 이웃에 거주할 경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질문에 서울과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며 지역규모가 큰 광역시에 거주하는 응답자도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학력이 아주 낮거나 아주 높을수록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조사되었다.

기혼자일수록 결혼이민자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자녀가 있는 응답자일수록 결혼이민자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였다. 월평균가구소득에서는 소득이 낮은 집단일수록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었다. 이는 여성부나 보건복지가족부의 연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결혼이민자와 결혼하거나 주위 친지들이 결혼이민자와 결혼을 하는 사람일수록 월평균 소득과 학력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설동훈 외, 2005)이기에 이들의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응답자는 한국인이 단일민족이 아니라고 답한 응답자가 결혼이민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였으며 단일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고 단일민족 특성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답한 응답자들이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를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단일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낮을수록, 결혼이민자 자녀와 응답자의 자녀가 어울리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였으며, 결혼이민자가 이웃에 거주할 경우 도움을 주겠다고 답하였다.

셋째, 결혼이민자를 접한 경험과 결혼이민자를 가족으로 두고 있는지에 따라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결혼이민자를 접한 경험이 있고, 결혼이민자를 가족으로 두고 있는 응답자가 결혼이민자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자녀 및 친척이 다른 민족과의 결혼을 하는데 긍정적으로 답을 하였으며, 결혼이민자를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는 지에 대한 질문에도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마지막으로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려 고자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역규모, 단일민족자부심, 가족유무 변인이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규모가 클수록, 단일민족자부심이 낮을수록 그리고 결혼이민자가 가족인 경우일수록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는 사회는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하고 배우고 우리사회가 그들의 다양함과 우리와의 차이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한국 사회의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며 낙오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어 이들이 잘 정착하고 한국인사이의 자녀가 잘 자란다면 차후 한국의 국가경쟁력에도 큰 도움일 될 뿐만 아니라 국제화시대를 살아가는데 큰 원동력이 될 것이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선행연구 고찰	3
3.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관련 변인	6
1) 사회·인구학적 변인	7
2) 단일민족주의	10
3) 친지관계유무	11
II. 이론적 배경	12
1. 단일민족주의에 관한 이론	12
2. 다문화 접촉에 관한 이론	14
3. 사회적 인식	17
III. 결혼이민자의 현황 및 특성	19
1. 결혼이민자 현황	19
2. 결혼이민자 특성	20
3. 결혼이민자 지원 현황	24
IV. 연구방법	35
1. 연구문제	35
2. 연구모형	35
3. 연구대상	35
4. 변수의 개념 및 측정	36

5. 분석방법	39
V. 연구결과	40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40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	42
3. 단일민족주의 변수에 따른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	45
4. 친지관계유무 변수에 따른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	46
5.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	48
VI. 결론 및 제언	53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II-1> 내향적 다문화 접촉의 유형	16
<표 II-2> 외국인과의 혼인	20
<표 II-3> 국적별 외국인과의 혼인	21
<표 II-4> 농촌지역(읍·면부)과 도시지역(동부)의 혼인	22
<표 II-5> 외국인과 혼인한 한국인의 혼인종류별 구성비	23
<표 II-6> 부부의 평균혼인 연령차	23
<표 IV-1>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	36
<표 IV-2> 설문문항 구성	38
<표 V-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41
<표 V-2> 단일민족주의 의식에 따른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의 차이	42
<표 V-3> 친지관계유무에 따른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의 차이	46
<표 V-4>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의 차이	47
<표 V-5> 기회균등에 대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48
<표 V-6> 가족과 결혼에 대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49
<표 V-7> 자녀와의 교류에 대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50
<표 V-8> 이웃관계에 대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51

그 립 목 차

<그림 IV-1> 연구모형	35
----------------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행정안전부¹⁾의 2008년 외국인주민실태조사에 따르면 2008년 5월 외국인 주민은 891,341명으로 주민등록인구의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7년 722,686명보다 23.3% 증가하는 등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로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행정안전부, 2008.07). 2008년 외국인주민실태조사에서는 전체 외국인주민 891,341명 중 외국인근로자가 49.1%인 437,727명, 국제결혼이주자가 16.2%인 144,385명,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6.5%인 58,007명이고, 외국인 중 국적 취득자가 7.4%인 65,511명으로 나타났다.

2007년과 비교하여 외국인 주민이 큰 폭으로 증가한 요인은 먼저, 지방자치단체 국제결혼 비용지원 등으로 국제결혼 이주자 및 자녀가 46.1%(42,000명), 국적취득자가 36.8%(15,000명) 증가하였으며 기타 외국인(유학생, 상사주재원 등)은 유학생 및 전문 인력 외국인(회화지도 등)의 증가와 함께 '06년도 최초 조사 시 누락된 대상자가 새로이 포함됨에 따라 83.2%(126,000명) 증가된 것으로 추정되며 외국인 근로자는 남성이 69%인 반면, 국제결혼이주자의 경우 여성이 8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08.07.29).

이처럼 여성결혼이민자 즉, 한국인 남성과 결혼을 통해 국내로 이주하여 온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의 급증 추세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6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했다²⁾. 국제결혼 건수는 전체 결혼 건수 중 2000년 3.7%(12,319건, 통계청)이었던 것이 2005년 13.5%(43,121건)로 최고치를 보였고 2006년 11.9%(39,690건), 2007년 11.1%(38,491건)로 약간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1) 前 행정자치부

2) 이는 베트남 정부에서 취하는 혼인 규제 강화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통계청, 2008).

그러나 국내 총 혼인 건수 345,592건(2007년 혼인통계결과, 통계청, 2008)에서 국제결혼이 38,491건(11.1%)으로 국내 총 혼인 건수에서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었다. 이것은 이미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의 결혼이 중요한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어 이는 우리사회가 다문화사회로 가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혼이민자는 비록 사회적 소수자이기는 하나 지역사회의 한 성원이자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 사회적 지원과 도움이 필요한 새로운 집단으로 등장하게 되었다(양옥경·김연수, 2007).

이에 따라 결혼이민자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결혼이민자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연구(최경숙, 2006; 이지혜, 2007; 강순정, 2008; 김양희, 2008; 김인철, 2008), 결혼이민자의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김영란, 2006; 박종보 외, 2006; 이성원·최유, 2006; 문순영, 2007; 이순태, 2007; 설동훈 외, 2008)와 결혼이민자 대상 교육에 관한 연구(구지은, 2006; 신경희, 2007; 김갑현, 2008)등이 있다.

하지만 국제결혼이라는 현상이 가시화된 것은 약 10여년에 불과하고 이주자들에게만 연구의 초점을 맞추다보니 한국인과 한국사회가 이러한 새로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는 또 다른 문제는 상대적으로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고(황정미 외, 2007),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연구는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더욱이 결혼이민자를 우리 사회의 진정한 구성원으로 수용함에 있어 요구되는 현실적인 정책대안 및 과제 등을 모색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들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어떠한가를 연구하는 것은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단일민족을 중요시하는 우리사회의 전통적 관념이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알아보고 단일민족주의 인식정도가 다문화 사회로 가는데 있어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결혼이민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결혼이민자와 가족이 되

는 한국인들이 늘어난 다는 것이므로, 그들과의 친지관계유무가 연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친지관계유무가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하여 어떠한 차이를 보이도록 하는지 이들 변수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친지관계유무 변인과 관련하여 결혼이민자와의 접촉과 가족유무에 관한 변수를 포함시키고,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고찰

결혼이민자라는 용어가 통용된 것은 최근에 들어와서 나타난 것이었고 그 전까지의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를 쓴 연구가 대부분이기에 그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1980년대에 이루어졌던 연구는(송성자, 1974; 박종삼, 1982)은 미군 아내인 한국인 여성에 대한 것으로, 국내보다는 미국에서의 적응에 대한 연구가 그 내용이었다. 송성자(1974)는 미국으로 결혼 이주한 한국 여성과 미국인 남성 간의 부부 갈등문제의 성격과 여성의 개인적 성격, 결혼 동기, 부부 관계에 관해 살펴 본 것이고, 박종삼(1982)은 문화적 갈등을 대인관계, 가족관계, 재정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1990년대 이전까지는 한국에서 국제결혼이란 가난한 한국의 딸들이 주로 미국이나 일본으로 결혼이민을 떠나는 것이 대부분으로 국내에서 외국인과의 혼인하여 사는 것은 매우 드물었다(설동훈, 2008).

하지만 1990년대 이후 국내로의 결혼이민자의 수가 증가하자, 이에 대한 연구도 시작이 되었고, 한국의 국제결혼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및 그 대책에 관해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결혼이민자 지원 단체의 활동가들은 한국사회의 국제결혼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소개하였고(최근정, 2003; 김상임, 2004; 양정화, 2005), 그들에게 가해지는 가정폭력사례도 보고하였다(박현정, 2004). 또한 이주여성들을 위한 지역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이금연(2001), 양혜우(2005)의 연구가 있다. 양혜우(2005)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어려움으로 문화

적 갈등 및 정체서 갈등, 낮은 사회적 성취감, 주변화 된 남성의 문제를 이야기하였다.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학계의 연구를 살펴보면 많은 석사학위 논문들이 발표가 되었는데, 여성 결혼이민자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최경숙, 2006; 이지혜, 2007; 강순정, 2008; 김인철, 2008)가 있고 여성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김나영, 2007; 장지혜, 2008; 최현, 2008)가 있다.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조선족(중국 동포) 여성에 대한 연구(성지혜, 1996; 홍기혜, 2000)와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에 관한 연구(조성원, 2000; 전수현, 2002)는 그들의 국제결혼 과정과 적응 및 갈등의 경험을 서술하였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실태 및 현황에 관한 연구는 김보라(2008), 서제명(2008)이 연구를 하였으며, 결혼이민자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박지영(2008), 방신영(2005)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는 문화적 지원(김영란, 2006), 법적 지원(박지영, 2008), 정책적 지원(임경혜, 2004; 주영애, 2008; 홍소연, 2007), 적응지원(김민영, 2008; 노하나, 2007; 유영은, 2007; 황윤주, 2008)이 있으며 결혼이민자의 교육에 관한 지원으로는 서혁(2007)의 연구를 볼 수 있다.

2008년에는 남성 결혼이민자의 결혼만족도(김양희, 2008)에 관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또한 여성 결혼이민자와 결혼을 한 한국남성의 결혼 적응(장온정, 2007)에 관한 연구도 있었다.

결혼중매업체에 관한 연구(윤정숙·임유경, 2004)는 특정 인종이나 국적의 여성들이 홍보되고 상품화되는 방식으로 선택되는가를 통해 국제결혼의 인신매매적 성격을 보여주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연구들이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결혼을 매매혼으로 규정하고 외국 여성을 국제결혼의 희생자로 이미화하여 고착시킴으로써 오히려 외국 여성들의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려는

의지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도 등장하고 있다.

최근에 들어 결혼이민자에 대한 전문 연구자들의 연구도 발표가 되었다. 윤형숙(2004)은 전라남도 지역에 결혼해 온 필리핀 여성들에 대한 심층연구를 통해 외국 여성들은 다양한 배경과 동기를 가지고 결혼을 하며, 자신의 결혼에 대한 의미를 만들어내고 가족 관계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임을 강조했다. 이혜경(2005)은 결혼이민자의 유입으로 한국사회가 이미 “실질적 의미에서” 이민사회가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한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결혼이민자 개인의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진 연구로 결혼이민자를 보는 일반인들의 시각이나 인식에 관하여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전국적 단위로 실시된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2005, 現보건복지가족부)에 의해 시행된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방안(2005)」을 시작으로 하여 이를 기반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회통합 지원 대책을 위한 연구가 이어졌다(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2006).

또한 정기 간행물 등의 논문에서도 결혼이민자의 지원방안에 거의 분포되어 있었다. 이들의 연구는 실제 상담내용을 주로 보고서에 실어 사실성이 뛰어나나 이혼이나 가정폭력 등 그 가정의 문제를 다룬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들의 가정의 ‘갈등’이 중심이 되었다(권유경, 2007).

다음으로 지방단체와 정부기관의 보고는 구체적인 질문의 응답을 담은 보다 대규모의 설문지 조사를 사용하여 포괄적인 실태파악이 가능하였다. 2005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국제결혼 이주 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방안」이라는 보고서는 결혼이민자의 규모와 개인적 배경의 데이터, 결혼생활의 제반사항 등의 방대한 분량을 담아, 전국적인 규모의 실태파악에 있어 매우 훌륭한 자료가 되었다. 하지만 설동훈 외(2006)가 연구한 「결혼이민자 가족실태 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등 정책적으로 활용이 될 논문이나 정부부서의 연구 용역 등으로 이루어진 실태조사 중심이었기에 심도 깊은 분석적 내용을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법제연구를 통한 지원방안 등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현행법(안)을 통해 본 국제결혼 여성이주민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문순영, 2007)과 다문화가족지원법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박종보·조용만, 2006), 그리고 다문화가정, 다문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사회통합방안을 위한 법제지원방안연구(이성원·최유, 2006)와 외국인 출입국 및 거주에 관한 법제연구(이순태, 2007)의 연구가 그것이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는 국정홍보처의 2007년 8월 국제결혼 이민자에 대한 국민조사나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을 파악한 양애경 외(2007)의 연구 외에, 외국인의 권리나 그들과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수용태도라든가 타문화 수용의식 등에 대한 중앙일간의 설문조사(2007.04, 세계일보)정도 뿐이다.

기존의 연구는 실태와 이에 따른 문제점 발견, 그리고 그와 연결된 복지시스템 구축에 치중하여 결혼이민자 자체에 대한 문제점 해결에 중점을 두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를 인식하는 한국인과 그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3.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관련 변인

인식(認識)이라는 단어를 사전³⁾에서 찾아보면 “사물을 분명히 분별하고 판단하여 아는 일. 또는 그 작용. - 예)환경 문제에 대한 ~이 부족하다/ 교육의 중요성을 ~하다.-, 『심』 대상을 감지하는 감각 및 지각으로부터 이를 분별·판단하는 기억·사유에 이르기까지의 광의의 의식 작용, 『철』 지각·기억·내성 및 이와 같은 이해를 나타내는 명제·판단을 포함하며, 의욕·정서와 함께 의식의 기본이 되는 측면 또는 기능” 이라고 되어있다.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인식에 관한 선행연구는 거의 전무한 편이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은 혼혈인이나 외국인에 대한 인식과는 다소 차이가

3) 민중예센스 사전 (한글2007 탑재)

있을 것으로 보인다. 후자의 경우 한시적으로 들어와 공부를 하는 유학생이나, 기간 내에 체류하여 돈을 버는 목적으로 국내에 온 외국인 노동자와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결혼이민자는 한국에서 가정을 이루고, 사회와 가정 내에서 다양한 역할이 주어지게 된다. 이에 결혼이민자를 받아들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일민족이라는 인식이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1) 사회·인구학적 변인

① 거주지역

거주지역에 따른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의 연구결과는 선행연구결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으나 국정홍보처와 여성부(前 여성가족부)에서는 2007년 국제결혼이민자에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민족을 ‘단일민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거주 지역으로는 서울에 거주하는 연구대상자 39.7%, 대구/경북에 사는 연구대상자의 37.6%가, 인천/경기에 거주하는 연구대상자의 36.2%가 우리민족을 단일민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3장의 결혼이민자 현황 및 특성에서도 나왔듯 결혼이민자가 농촌지역보다 도시지역에 더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결혼이민자와 더 많은 접촉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연구에서도 거주지역에 따라서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② 지역규모

지역규모에 따라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 연구결과는 선행연구결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으나 국정홍보처와 여성부(前 여성가족부)에서는 2007

년 국제결혼이민자에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민족을 ‘단일민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서울(39.7%), 대구(37.6%), 인천(36.2%)순으로 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단일민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결혼이민자 사회적응에 ‘도움을 줄 의향이 있다’는 의견도 대구광역시(98.2%)에 거주하는 주민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지역규모에 따라서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할 것이다.

③ 연령

연령에 따라 결혼이민자에 대한 연구결과는 국내에서는 살펴보기 어려웠으나 박수미·정기선(2004)의 연구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폭넓게 분석하였는데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령이 젊을수록 모든 소수집단(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여성, 노인, 기타 소수자)에 대한 편견적 태도가 낮아졌다고 하였다. 또한 국정홍보처와 여성부(前 여성가족부)에서는 2007년 국제결혼이민자에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결혼이민자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응답자는 20-39세로 응답한 사람의 서울에 거주하는 20~39세(81.3%)와, 광주/전라에 거주하는 20~39세(85.6%)에서 결혼이민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답변을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연령에 따라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④ 성별

성별에 따른 결혼이민자 인식에 대한 연구결과는 국내에서는 살펴보기 어려웠으나 임소현(2008)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동남아시아인의 수용 수준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부(2007, 前 여성가족부)와 국정홍보처의 국제결혼이민자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에서는 결혼이민자 사회적응에 ‘도움을 줄 의향이 있다’는 의견은 여성(96.2%)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성별에 따라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⑤ 학력

학력에 따라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의 연구 결과를 찾기 어려웠으나 박수미·정기선(2006)의 연구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관하여 학력이 높을수록 편견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본 연구에서도 학력이 높을수록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⑥ 결혼여부

결혼여부에 따른 결혼이민자에 인식에 대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결과에서 찾아보기 어려웠으나 여성부(2007, 前 여성가족부)와 국정홍보처의 국제결혼이민자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에서 결혼이민자 사회적응에 ‘도움을 줄 의향이 있다’는 의견에 주부의 96.2%가 도움을 줄 의향이 있다는 답변을 하였다 (국정홍보처·여성가족부, 2007).

이에 본 연구에서도 결혼유무에 따라서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⑦ 외국체류경험

외국체류경험에 따른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의 연구결과는 선행연구결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으나 국정홍보처와 여성부(前 여성가족부)에서는 2007년 국제결혼이민자에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민족을 ‘단일민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답변에 외국체류 유경험자인 40.6%가 우리민족

이 단일민족이 아니라고 답하였다(국정홍보처·여성가족부, 2007).

이에 본 연구에서도 외국체류경험이 있는 사람이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단일민족주의

단일민족이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는 대개 “한나라의 주민구성이 단일한 인종으로 이루어진 민족”으로 규정하고 있다.⁴⁾ 그것은 다른 민족의 피가 섞이지 않은 단일혈통을 가진 민족이라는 의미로 복합민족 또는 혼혈성 민족이라는 상대어가 쓰이고 있으며, 이 경우 단일민족으로 구성된 국가는 다민족국가에 대한 상대어로 사용되고 있다(양애경 외, 2007).

단일민족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누구에 의해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는가는 확인할 수 없지만 해방 후 우리 민족의 특징을 드러내는 말로 조금 더 대중적으로 쓰여지고 있었다.

단일민족의식에는 공동운명체의식이 수반되어 있는데 민족을 동질적인 관계로 보는데서 그치지 않고 동일한 운명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공동운명체로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이 단일민족론과 함께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이 공동운명의식은 개인보다는 민족을 중시하며 민족의 안녕과 발전을 통해 개인의 자아를 실현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 민족단위의 공동운명의식이 수반되어 있기에 단일민족의식은 대중을 결합시키고 움직이는 역동성을 수반해왔다.

단일민족주의가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이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선행연구결과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국정홍보처와 여성부(前 여성가족부)에서는 2007년 국제결혼이민자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국민의 과반수 이상(63.6%)은 우리민족을 ‘단일민족’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4) 정인승 외 편, 「한국어대사전」(현문사, 1976).

‘세계화라는 흐름 속에서 단일민족만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72.6%)는 전향적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단일민족’이라는 순혈주의 전통은 인정하지만, 세계화라는 흐름과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순혈주의에만 매몰되어선 안 된다”고 하였다. 여기서 단일민족주의가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리라 사료되어 이 개념을 살펴보았다.

3) 친지관계유무

친지관계유무에 따른 결혼이민자에 대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결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으나 경기도와 서울시 각 지역의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코시안에 대한 개방성과 고정관념에 대해 연구한 변선영(2008)의 연구결과에서는 코시안이 주변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개방성과 고정관념에 대한 차이를 보였다. 코시안과의 친밀도가 높은 집단(친구)일수록 개방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친밀도가 낮은 집단일수록 개방성이 낮고 두 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가족, 친구 관계에 있을 때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II. 이론적 배경

1. 단일민족주의에 관한 이론

단일민족주의는 한민족의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단일민족주의는 사회통합을 이루고 국가정책에 있어 기초를 잡는 하나의 이론이었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단일민족 이론을 적용했다기보다는 우리나라 국민의 의식에 단일민족이라는 이념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박호성(1997)은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7세기에 ‘민족’의 통합을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신라에 의한 한반도 통일은 다양한 부족의 융합과 문화·언어·풍습 등의 발전적 통합을 가능케 한 획기적인 계기를 만들어주었으며 통일신라를 통해 현대 우리 민족의 발전기틀이 잡혀졌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는 그 이후,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탄압과 8·15 후의 한국전쟁을 통한 분단의 고착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근 1300여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이른바 ‘단일민족’의 통일국가로 존속해왔던 것이다.”라고 단일민족을 정의하였다.

우리 머릿속에 뿌리박혀 있으나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단일민족의식을 부인해야 하는 현재 한국인들의 갈등이 결혼이민자를 바라보는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임지현(1999)의 연구에서는 단일민족주의에 대하여 “지난 100여 년간 한반도의 역사 속에서 전개된 삶과 죽음, 노동과 문화, 사상과 느낌은 물론 심지어 개인적 고통과 사랑까지도 민족의 거대한 담론체계 속에 흡인되었다. 한반도에서 태어난 한국인의 자각을 갖고 한국인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곧 그것이 긍정적인 의미에서든 부정적인 의미에서든 민족주의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것은 계급과 성, 지식의 유무 그리고 연령에 상관없이 역사의 명령이었고 한국사회의 규범이었다. 민족주의의 명분은 실로 한국인

이라면 누구도 뿌리칠 수 없는 거대한 역사적 힘이었던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정영훈(2001)의 연구에 따르면 “단일민족론(주의)은 그동안 한민족이 사상·계급·지역·이해관계를 초월해 하나의 동체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당위성과 가능성의 근거가 되어왔다”고 하였다. 단일민족의식을 “대중적으로 공유하게 된 것도 근대 이후의 일이라 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조옥라 외(2006)의 연구에서는 “인접 국가들과의 교역, 인적 교류, 전쟁이나 피정복·정복 시기를 거쳐 타민족과의 다양한 접촉이 있었으나 대체로 고립된 상태에서 타민족과 접촉이 적어 단일민족·단일사회 또는 순혈사회로 인식되어 왔다”고 하였다.

“‘단군의 자손’ 의식이 대중화되면서 한민족은 ‘근대적 민족’으로 발전하였으며, 단일민족론은 그러한 근대적 민족의식의 한 표현으로서 확산되었고 단일민족의식에 토대해 한국인은 사상과 계급을 초월한 민족적 대단결을 주창할 수 있었으며, 오늘날까지도 그것은 한국인에게 공유되면서 민족정체성의 한 부분이자 통일논의의 근거가 되어 왔다”고 하였다(정영훈, 2001).

엄한진(2006)의 연구에서도 “한국인들이 유달리 다른 민족에 대해 배타적인 것 같이 보이는 이유도 한국인들에게 유달리 ‘단일민족 신화’라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이기보다는 일상에서 다른 민족을 접할 기회가 극히 적었던 현실 때문”이라고 하였고 “의식의 문제라기보다는 구체적 경험과 객관적 현실의 문제인 것”이라고 하였다. 서유럽을 포함해 많은 근대사회에서 하나의 국가 속에 다수의 종족들이 공존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을 표현하는 개념 중 하나가 다민족 사회인 것이다. 그리고 다민족 사회라는 개념은 이렇게 근대 이후의 사회에서 다수의 종족이 상당히 독자적인 생물학적 특징과 언어, 문화적 전통을 유지한 채 공존하는 상황을 가리키는 개념인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경우를 보면, 비록 한민족이 역사를 통해 다양한 종족과의 공존 및 혼합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종족 간 공존을 초래했을 뿐 귀화 등을 통해 타민족이 한민족에 동화되어 결과적으로 한민족이라는 주류 민족

의 단일한 역사, 언어 및 문화적 특성만이 남게 되었다. 일제 강점기와 분단이라는 문제를 논외로 한다면 불과 10여 년 전부터 많은 수의 이민족의 유입이 있기 전까지 적어도 남한의 근대사회는 하나의 민족으로 구성된 국가였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다양한 종족 간 공존의 경험이 미약하고 충분히 오랜 기간 다수의 종족이 공존한 경험이 매우 약하다는 점은 부정하기 힘든 사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단일민족’이라는 사고에 대한 비판은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다른 한편 최근 학계에서는 우리나라는 이민족의 침략, 국제교역 등 여러 민족과의 접촉을 통해 다문화접촉이 이루어져왔다고 주장하면서(류상태 2006; 최강민 2006) 단일민족은 허구라고 주장하는 연구가 속속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연구는 단일민족이 그저 혈통의 단일민족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며 그들도 단일민족이라는 의식은 한 문화권 안의 사람들의 하나의 의식이 단일민족이라고 확대 해석된다고 보고 있다. 국가와 민족을 가리키는 ‘nation’이라는 단어의 번역이 민족이라는 하나의 단어로만 번역이 되어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였다. 그들도 단일민족이 혈통의 단일민족이 아니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지 한민족이라는 단일 문화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기에 이 연구에서도 단일민족의식이라는 변수가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2. 다문화접촉에 관한 이론

위에서도 보았듯이 단일민족이기는 하나 이민족의 침략, 국제교역 등으로 예로부터 한민족과 많은 접촉이 있어왔음을 볼 수 있다.

다문화 접촉의 역사적 사건을 살펴보면 먼저, 서기 48년에 가야국(가락국)의 김수로왕은 인도에서 온 공주 허황옥을 아내로 맞아 결혼을 한 것을 시작으로(김병모, 2008), 고려시대의 원나라의 지배로 인한 강제적인 문화교류, 조선시대의 임진왜란과 두 차례의 호란, 그리고 일제식민지 시기를 거치면서

다양한 문화와의 접촉을 하게 된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해방 후 미군정의 실시로 미국문화의 접촉이 이루어졌으며 이 당시 혼혈아들이 많이 출생하였지만 사회적으로는 이들을 수용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6·25이후 산업화시대를 거치면서 미국과 일본과의 협정이 이루어져 재일 동포들의 왕래가 이루어졌고 일본인들의 투자가 시작되었다. 그 후 베트남 전쟁에 한국인들이 파병되었고 많은 민간인들이 기술자로 참여하게 되었다. 경제적인 이익과 새로운 외국문화가 들어오는 계기가 되었다. 이 전쟁 참여 과정에서 많은 한국인 남성들이 베트남 여성들과의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여기에서 자녀들이 태어나 ‘라이 타이한’들의 탄생을 이루어졌다.

1970년대에는 수출 주도의 공업화로 인하여 광부와 간호사들이 서독에 파견되는 인력 송출이 이루어졌으며 중동으로의 건설인력도 송출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한국사회에 외국인노동자라는 새로운 집단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중심으로 한국보다 생활수준이 낮은 나라의 출신자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더 나은 취업기회 때문에 한국으로 몰려들었다. 또한 1990년 후반부터는 한국 학생들의 해외유학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미국, 캐나다, 호주, 중국, 일본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필리핀 등 영어권 국가로도 많은 학생들이 유학을 떠나고 있다. 한국에도 중국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들의 유학이 증가하였다. 결혼이민자도 마찬가지로 1980년대 종교단체(통일교)를 통해 일본 여성과의 혼인을 시작으로 하여 현재까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한국인들은 일제 식민지 이후 빈번하게 외국인과의 다문화 접촉할 기회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양한 인종이나 민족들 간 상호교류에 따른 다문화 접촉은 그 자체로서 문화적 현상으로 문화적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문화는 개인의 사고와 행동을 지배하는 사회의 구조적 배경이 아니라, 개인이 주체적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 구성의 과정에서 형성되고 재형성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2006).

이러한 점에서 다문화 접촉에서 유발되는 문화적 갈등이나 정체성의 상실과 같은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문화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사회경제적 문제를 문화의 문제로 간주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데, 즉 “민족적이고 문화적인 것처럼 보이는 갈등 뒤에는 흔히 경제적인 문제, 경제적인 이유가 숨어있다. 이런 점에서 문화적 갈등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원인이 된다고보다는 오히려 그 결과”라고 할 수 있다(Martiniello, 1997). 그럼에도 한 문화권에 속하는 사람들의 다른 문화 수용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문화 간 접촉경험의 성질을 다루어야 할 필요성은 문화 간 상호작용 및 문화적응을 다룬 서구의 선행연구들에서도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Gudykunst 1998; Liebkind 2000; Nesdale & Todd 2000; 양애경 외, 2007 재인용).

일제 식민지배로부터 해방된 이후 지난 1980년대 정도까지만 해도 타문화 접촉은 영화나 TV 등 대중매체를 통한 간접경험이거나 해외 이민이나 유학, 해외 주재상사 근무 등 외향적 경험이었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내향적 타문화 접촉은 중국계 한국인(화교)과 국내 체류 미군이나 외국계기관 종사자들과의 교류에 따른 직접 경험 정도였다.

조옥라 외(2006)는 다른 문화와의 접촉 기회는 물론 이러한 직접적 이유에 의한 경우 뿐 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하여 다음의 표와 같이 분류하였다.

<표 II-1> 내향적 다문화 접촉의 유형

		체류기간		
		장기	중기	단기
체류	취업	영주외국인 (화교)	이주노동자(국내기업 취업) 외국계 기관 종사자	단기취업

목적	비취업	결혼이민자	외국인 동반자(가족) 외국인 유학생	관광
----	-----	-------	------------------------	----

자료 : 조옥라 외(2006).

그 연구에 따르면 위의 표와 같이 다문화 접촉은 접촉의 주체와 대상 간 관계에서 누가 어떻게 이동하여 접촉하는가에 따라 외향적(outward) 접촉과 내향적(inward) 접촉으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외향적 접촉은 주체가 자신의 생활공간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대상을 접촉하는 경우이며, 내향적 접촉은 반대로 주체의 생활공간 속으로 그 대상이 이동해 들어옴에 따라 접촉하는 경우로 설명한다. 이러한 구분은 해외 접촉과 국내 접촉(또는 유출과 유입에 따른 접촉), 즉 국가를 단위로 할 경우 국민 출국자와 외국인 입국자를 의미한 것이다.

변선영(2008)에 연구에서는 코시안(Kosian)에 대한 일반 중학생들의 개방성과 고정관념에 관하여 연구를 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도 코시안에 대한 접촉 경험에 따라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접촉기간에 따라서도 2년 이상 긴 시간 동안 알고 지낸 경우에 개방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정관념에서도 접촉경험이 있는 경우에 코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므로 위의 연구를 볼 때 한국인들은 다문화와의 접촉이 역사적으로 계속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에 대해 접촉유무에 따라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3. 사회적 인식

사회적 인식이란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자신과 타인에 대하여 정확하고 연령에 적합한 긍정적인 관념을 형성하는 것과 사회적 상황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기 등과 같은 사회적 기술을 의미한다”라고 하였

다(김현진, 2007; 장문주, 2008).

그러므로 위의 정의를 토대로 본다면 결혼이민자의 대한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이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유지하는 가족이나 친구, 친지일수록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III. 결혼이민자 현황 및 특성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을 말한다.⁵⁾ 많은 연구자들의 논문이나 정부정책, 국가기관 연구에서는 이주여성, 국제결혼, 여성결혼이민자 등 여러 가지의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여성결혼이민자라는 개념은 여성만을 구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남성결혼이민자를 포함할 수 없는 개념이라고 생각되어 ‘결혼이민자’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재한외국인기본법 제2조3항에 정의되어 있는 “결혼이민자”의 개념을 채택하여 사용하였다.

1. 결혼이민자의 현황

국내 국제결혼은 1980년대부터 종교단체(통일교)를 통해 일본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시작되었으며, 1990년대 초에는 한·중 수교 이후 중국동포(조선족)와 중국 한족의 결혼이주가 활발하게 되었는데 이는 조선족들의 취업이주 및 농촌총각의 결혼문제와 맞물려 국제결혼이 전체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게 되었다. 왕한석(2005)의 연구도 국제결혼이 급증한 것은 다양한 교류와 문화접촉에서 비롯된 산물이 아니라 “1980년대 중반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선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있다.

국제결혼의 증가는 1990년 말부터 국제결혼을 주관하는 전문회사들이 생겨나면서부터 본격화되었다. 2002년을 전후하여 중국, 필리핀, 러시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아시아를 대상으로 외국여성의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법적, 윤리적, 사회적으로 안전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김민영, 2008).

내국인과의 결혼에서 소외된 한국인 남성들과 “경제적으로 좀 더 나은”(전

5) 재한외국인기본법 제2조3항

만길, 2005)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외국인 여성들 간에 이루어지는 국제결혼이 성사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지인의 소개, 종교 단체의 주선, 결혼 중개업체의 알선 등이 많으며,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국제결혼을 할 경우는 94%가 돈을 지불하며, 종교 단체를 통한 국제결혼도 45% 정도가 돈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설동훈 외, 2005).

2. 결혼이민자의 특성

① 수적 규모

2007년 외국인과의 혼인은 총 38,491건으로 2000년의 12,319건보다 3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2005년 이후 2년째 감소하고 있다. 이는 베트남 사람과의 국제 혼인 규제강화로 인한 혼인감소의 영향으로 보인다.

2007년에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혼인은 29,140건으로 전년보다 3.5% 감소하였으며 한국여성과 외국남성의 혼인은 9,351건으로 전년보다 1.4% 감소하였다.

<표 II-2> 외국인과의 혼인

(단위: 건,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총 혼인건수	334,030	320,063	306,573	304,932	310,944	316,375	332,752	345,592
외국인과의 혼인	12,319	15,234	15,913	25,658	35,447	43,121	39,690	38,491
총 혼인건수 대비 구 성 비	3.7	4.8	5.2	8.4	11.4	13.6	11.9	11.1
증 감	1,749	2,915	679	9,745	9,789	7,674	-3,431	-1,199
증 감 륜	16.5	23.7	4.5	61.2	38.2	21.6	-8.0	-3.0
■ 한국남성+외국여성	7,304	10,006	11,017	19,214	25,594	31,180	30,208	29,140
증 감 륜	26.5	37.0	10.1	74.4	33.2	21.8	-3.1	-3.5
■ 한국여성+외국남성	5,015	5,228	4,896	6,444	9,853	11,941	9,482	9,351
증 감 륜	4.6	4.2	-6.4	31.6	52.9	21.2	-20.6	-1.4

자료: 통계청, 2008

② 국적

한국남성과 외국여성과의 혼인은 총 29,140건으로, 외국여성의 국적은 중국 14,526건(49.8%), 베트남 6,611건(22.7%), 캄보디아 1,804건(6.2%) 순으로 나타났다.

급격히 증가하던 베트남 여성과의 혼인이 2007년에는 전년보다 34.7% 감소하였으나 캄보디아는 전년보다 357.9% 증가하였다.

한편 한국 여성과 외국 남성의 혼인은 총 9,351건으로 전년보다 1.4% 감소하였다. 외국 남성의 국적은 일본 3,684건(39.4%), 중국 2,489건(26.6%), 미국 1,344건(14.4%)순으로 세 국가가 전체의 80%를 차지한다.

<표 II-3> 국적별 외국인과의 혼인

(단위: 건,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구성비	전년대비 증감률
한국남성+ 외국여성	7,304	10,006	11,017	19,214	25,594	31,180	30,208	29,140	100.0	-3.5
중 국	3,586	7,001	7,041	13,373	18,527	20,635	14,608	14,526	49.8	-0.6
베 트 남	95	134	476	1,403	2,462	5,822	10,131	6,611	22.7	-34.7
캄보디아	*	*	*	19	72	157	394	1,804	6.2	357.9
일 본	1,131	976	959	1,242	1,224	1,255	1,484	1,665	5.7	12.2
필 리 핀	1,358	510	850	944	964	997	1,157	1,531	5.3	32.3
몽 골	77	118	195	318	504	561	594	745	2.6	25.4
태 국	270	185	330	346	326	270	273	531	1.8	94.5
미 국	235	265	267	323	344	285	334	377	1.3	12.9
기 타	552	817	899	1,246	1,171	1,198	1,233	1,350	4.6	9.5
한국여성+ 외국남성	5,015	5,228	4,896	6,444	9,853	11,941	9,482	9,351	100.0	-1.4
일 본	2,941	3,011	2,377	2,613	3,378	3,672	3,756	3,684	39.4	-1.9
중 국	218	222	272	1,199	3,621	5,042	2,597	2,489	26.6	-4.2
미 국	1,095	1,132	1,210	1,237	1,348	1,413	1,455	1,344	14.4	-7.6
캐 나 다	149	164	174	223	230	285	308	376	4.0	22.1
호 주	74	79	89	108	136	102	139	159	1.7	14.4
파키스탄	39	64	126	130	103	219	152	134	1.4	-11.8

영 국	66	70	87	88	120	106	138	126	1.3	-8.7
프 랑 스	65	58	80	78	83	76	98	115	1.2	17.3
기 타	368	428	481	768	834	1,026	839	924	9.9	10.1

* 기타에 포함
자료 : 통계청, 2008

③ 거주 지역

2007년 외국 여성과 한국 남성의 혼인건수는 도시지역(동부)이 19,762건으로 농촌지역(읍·면부)의 8,033건 보다 많았다. 그러나 전체 혼인 건수의 비율 중에서 외국 여성과의 혼인 구성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농촌지역(13.5%)이 도시지역(7.3%)보다 높았다.

2007년 혼인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한국남성 7,930명 중 40.0%에 해당하는 3,172명이 외국 여성과 혼인하였으며, 이는 전년보다 1.0%p 감소한 것이다.

농촌지역 혼인 남성 중 10.0%가 농림어업종사자이고, 그 중 44.5%가 외국 여성과 혼인하였으나, 전년보다 1.7%p 감소한 것이다.

<표 II-4>농촌지역(읍·면부)과 도시지역(동부)의 혼인

(단위: 건, %)

		혼인건수 (A)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과의 혼인		농림어업종사 남성의 혼인		농림어업종사 남성과 외국 여성과의 혼인	
			건수(B)	구성비(B/A)	건수(C)	구성비(C/A)	건수(D)	구성비(D/C)
2006년	계*	332,752	30,208	11.9	8,596	2.6	3,525	41.0
	동부	256,318	19,889	7.8	1,767	0.7	521	29.5
	읍·면부	58,383	8,746	15.0	6,481	11.1	2,991	46.2
2007년	계*	345,592	29,140	11.1	7,930	2.3	3,172	40.0
	동부	270,980	19,762	7.3	1,699	0.6	515	30.3
	읍·면부	59,701	8,033	13.5	5,953	10.0	2,651	44.5

* 국외 및 미상 포함

자료 : 통계청, 2008

④ 혼인형태

외국 여성과 혼인한 한국 남성의 초혼 구성비는 2007년 63.2%로 전년보다 0.8%p 감소하였다.

외국 남성과 혼인한 한국 여성의 초혼 구성비는 2007년 58.9%로 2.4%p 증가하여, 재혼에 대한 초혼비는 1.4로 전년보다 0.1 높아졌다.

<표 II-5> 외국인과 혼인한 한국인의 혼인종류별 구성비

(단위: %)

혼인종류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한국남 성+외국 여성	초혼(A)	75.8	67.4	66.8	59.0	54.1	56.2	64.0	63.2
	재혼(B)	24.2	32.6	33.2	41.0	45.9	43.8	36.0	36.8
	비(A/B)	3.1	2.1	2.0	1.4	1.2	1.3	1.8	1.7
한국여 성+외국 남성	초혼(A)	63.4	61.6	65.3	57.6	47.1	44.3	56.5	58.9
	재혼(B)	36.6	38.4	34.7	42.4	52.9	55.7	43.5	41.1
	비(A/B)	1.7	1.6	1.9	1.4	0.9	0.8	1.3	1.4

⑤ 평균 혼인 연령차

2007년 한국남성과 외국여성 부부의 평균 혼인 연령차는 11.3세로 전년보다 0.2세 적어졌으나, 한국인 부부의 혼인 연령차(2.4세)보다 8.9세 많다. 2007년 한국여성과 외국남성 부부의 평균 혼인 연령차는 4.2세로 2000년 6.5세보다 2.3세 적어졌다. 한국인 부부의 혼인 연령차(2.4세)보다 약 1.8세 많게 나타났다.

<표 II-6> 부부의 평균 혼인 연령차

(단위: 세)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한국 남성+외국 여성	6.7	7.4	7.8	8.2	8.3	9.1	11.5	11.3
한국 여성+외국 남성	6.5	6.5	5.2	4.1	3.1	2.7	4.1	4.2
한국 여성+한국 남성	2.7	2.6	2.6	2.6	2.6	2.5	2.4	2.4

3. 결혼이민자 지원 현황

(1) 정부지원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관심은 2004년부터 시작되어 2005년 정부의 용역보고서가 발간되었고, 2006년 4월 26일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와 교육인적자원부·외교통상부·법무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농림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노동부·여성가족부·중앙인사위원회·기획예산처·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의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4회 국정과제회의를 개최하여 ‘혼혈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 기본방향’과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을 확정함으로써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기본방향이 정하였다. 국정과제회의에서 제시된 대책회의의 결과로서 기본방향은 결혼이민자 여성에 대한 차별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과 열린 다문화사회 실현으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탈법적인 결혼을 방지하고 입국 후 안정적인 체류와 적응을 지원하며 이들의 자녀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종합적인 추진체계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한 지원대책의 주관 부처로는 여성가족부가 지정되었다.

그 후 2008년 새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주관부처가 보건복지가족부로 변경되는 등 각 정부 부처의 명칭이 변경되고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부처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확장되었다. 아래에서는 정책을 담당하였던 부처 순서대로 기재하였다. 각 부처의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업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여성부

2008년 3월 1일 새정부 조직개편으로 여성가족부의 가족정책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면서 여성가족부는 여성부로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가족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08년 이후로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책이 보건복지가족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에 2007년까지 여성가족부에서 이루어진 것을 간

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사업,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사업, 국제결혼 부부교육 프로그램 등 가족정책적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이 가운데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사업은 전국 각지의 이주여성단체와 여성단체, 외국인노동자단체가 참여하여 한국어교재와 모성보호가이드를 편찬하고 한국어교육과 문화교육, 생활상담, 출산도우미 파견사업, 문화유적 탐방과 문화축제 참가, 요리교실, 전통문화체험 등을 실시하였다.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사업은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서비스와 함께 자녀교육, 가족상담 등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을 위한 지역차원의 통합지원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였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와 남편간의 의사소통과 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결혼 부부교육 프로그램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사업을 통해 여성가족부는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각종 단체와 기관에서 실시해오던 사업을 체계화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적응 및 사회통합을 위한 종합 서비스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서비스 보급의 기반을 구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06년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관련 사업에 특화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계획을 추진하여 2007년 12월까지 38개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개소하였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과 한국문화 적응, 가족생활적응 및 가족관계의 증진 등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여성회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지방문화원, 여성결혼이민자 및 외국인노동자 관련 활동을 추진해온 NGO 등 다양한 기관에서 그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

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교육사업과 상담사업, 자녀보호사업, 자조 집단사업, 문화·정서지원사업, 유관기관 네트워크 형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핵심은 교육 사업으로 기본적으로 한국어교육과 가족교육, 문화교육, 정보화교육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개인 및 가족상담, 교육 시 자녀 보호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다.

2) 보건복지가족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보건복지부에서는 모·부자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고 긴급복지지원사업과 무료진료사업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여성에 대한 생계, 의료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또한 「행복한 한국생활 도우미」를 발간하여 결혼이민자 여성이 입국에서부터 한국생활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였다.

2006년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의 추후 대책으로 지적된 탈법적인 결혼을 방지하기 위하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8년 6월 시행되었고, 결혼이민자에 대한 안정적인 체류와 적응, 그리고 이들 자녀의 지원을 담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도 2008년 9월 시행되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거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책 기관인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명칭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08년 3월 1일자로 가족정책이 이관된 보건복지가족부는 2007년 12월까지 38개소인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2008년 11월 현재 80개까지 개소하였고, 2009년에는 110개, 2010년까지 140개의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를 위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2008년 예산을 2007년 39억 원보다 471.8% 증가한 223억 원으로 확대 편성하여 정책을 추진하였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여성가족부에서 전담하던 사업을 다문화가족과를 신설하

여 2006년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결혼이민자를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결혼이민자 본인에 집중되어 추진되어 온 정책을 다문화가족 전체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강화대책을 내놓아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생애주기별로 체계적으로 접근한다(2008.1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고 발표하였다.

3) 법무부

1997년 12월 13일 국적법의 전문개정을 통하여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 배우자에게도 국적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존에 있던 외국인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과 동시에 국적취득의 기회(F2: 거주비자)가 주어지던 것을 위장결혼 방지의 목적으로 결혼 후 한국에 2년 이상 거주할 경우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F-1:방문동거 비자, 취업은 불가능)으로 변경하였다.

그 후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 요건 중 한국인 남편이 사망이나 실종하였을 경우, 남편의 귀책사유에 의해 이혼이나 별거를 하였을 경우, 미성년자 자녀를 부양할 경우에 간이귀화 잔여기간을 충족하고 법무부 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귀화할 자에 한하여 귀화할 자격(F2:거주비자)을 주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였다⁶⁾.

6) 제6조 (간이귀화 요건)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양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자
-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자)를

체류, 국적관련 사항, 가정 및 성폭력 사건 처리절차 등을 담은 「여성결혼 이민자 정착지원을 위한 가이드북」을 5개 언어(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로 제작하여 2006년 3월 22일부터 입국심사 시에 배포하였다.

2003년부터 여성폭력 피해 외국인 여성에게도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였고, 2006년 5월 9일 국적법 및 국적업무처리지침⁷⁾의 개정을 통해 외국인에게 혼인중단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공인된 여성관련단체"의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간이귀화) 허가신청 접수가 가능하도록 하여 외국인 배우자의 어려움을 개선하도록 하였다.

또한 법무부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되는 외국인 정책에 관한 5년 단위 국가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에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대상기간은 2008년~2012년까지이다. 이 정책 중의 한가지인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자 2009년 1월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를 시범 도입하여 결혼이민자와 일반귀화 신청자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전문개정 2008.3.14]

- 7) 제9조의 4(한국인배우자와 혼인관계가 단절된 외국인의 귀화신청 접수 등) ① 법제6조 제2항 제3호의 실종이라 함은 민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 ② 법 제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귀화를 신청하는 자는 판결문, 불기소결정문, 진단서, 파산 등 결정문, 가출신고서, 출국사실증명원 또는 한국인배우자의 4촌이내 친족이나 혼인관계 단절 시 주거지 통(반)장 작성의 확인서, 공인된 여성 관련 단체 작성의 확인서,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 등에 의해 자신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 ③ 법 제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여야 할 자임을 이유로 귀화를 신청하는 자는 판결문, 이혼신고서 및 확인서등본, 한국인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족이나 주거지 통(반)장 작성의 확인서 등에 의해 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 ④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불법체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불법체류의 점을 제외하곤 모든 구비서류를 구비한 자에 한해 신청서를 가접수하여 가접수증을 발급하고, 가접수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단속 또는 강제퇴거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절차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61조 규정에 의한 특별체류허가(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29.(G-1)의 체류자격)를 한 다음 정식으로 접수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1. 법 제6조 제2항 제3호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1998.6.14. 이전에 국민과 혼인하여 국적을 취득한 자로 혼인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원 국적을 포기함으로써 사실상 무국적 상태에 있는 자

의 한국어 초급 수준, 한국사회 이해 등 한국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소양 부족으로 인한 취업과 사회적응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4) 문화관광체육부

문화관광부에서는 2005년부터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회문화예술교육과 지방문화원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과 문화예술체험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사회문화예술교육은 한국어교육, 전통문화와 예절 체험, 문화유적답사 등이 주를 이루었으며 예술치료와 자국어 연극 등이 일부 포함되었다.

이와 함께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지방문화원 문화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05년 지방문화원 문화학교 중 여성 결혼이민자 문화학교를 열기도 하였다.

5)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대학생 멘토링과 교사, 또래집단과의 결연, 다문화가정 자녀 지도를 위한 교사의 역량 강화, 타문화에 대한 편견 극복을 위한 교과과정 및 교과서 개편, 지역인적자원사업을 통한 지역단위 프로그램 활성화 등의 대책을 수립하고 발표하였다. 그 일환으로 2006년부터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역단위의 종합적인 지원프로그램인 '결혼이주 여성 정착 및 자녀정체성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였고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에서는 여성 결혼이민자를 우선 지원 부문으로 설정하여 그 결과 결혼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 문화체험교육 등 총 30개 사업이 지원 대상에 선정하였다.

(2) 지방자치단체

결혼이주 여성 정책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중앙부처의 정책을 일선에서 시행하는 한편 지역의 상황에 맞춰 자체적인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 정책 시행기관

전국의 16개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산하 25개 여성회관, 232개 기초자치단체, 153개 농업기술센터, 396개 종합사회복지관 등 총 822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김이선 외, 2006)에 의하면, 전체 기관 중 29.4%에 달하는 242개 기관에서 여성결혼이민자 관련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와 관련된 기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매우 다양한데, 우선 한국어교육, 한국요리강습, 문화유적 탐방, 한국의 전통문화 체험, 생활예절교육, 각국의 언어와 음식 등 생활문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며 한국의 역사와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족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상담과 교육도 여성 결혼이민자 대상 사업의 주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으며,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 외부에서도 사회적인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과 건강검진, 심리치료, 도우미 파견사업 등의 프로그램도 제공되고 있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교육, 즉 컴퓨터 교육, 교양취미교육 등도 추진되고 있으며 취업기술 교육과 일자리 알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장기자랑이나 야유회 등의 위안 행사를 개최하기도 하고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출신국가의 풍물을 전시하고 요리를 체험하는 기회도 있으며,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친정 방문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각각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되기도 하고 관련 프로그램은

연계한 종합 프로그램으로 제공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 중 결혼이민자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기관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소개하기로 하겠다.

①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기본법 제 35조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는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을 위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구 등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되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사업의 큰 틀을 개발·제공하며, 총괄기획, 조정, 지원, 평가, 프로그램 개발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008년 12월 현재 전국에 83개소가 개소되었으며, 서울 각 구에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4개와 경기도에 25개로 가장 많이 개소되어 있으며, 부산과 인천, 경북, 충남에 각각 4개소, 대구, 경북, 전북, 전남, 제주에 각각 2개소, 광주와 울산에 각 1개소가 있다. 그리고 강원도 3개소, 충북에 1개소가 위치하여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 방향은 요보호가족만이 아니라 모든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지향하며,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를 지향한다. 또한 가족 전체를 고려한 통합적 서비스, 예방과 돌봄 및 기능강화를 위한 포괄적 서비스, 전문적인 서비스를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자 하였다.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같이 관할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위치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가족의 단위로 결혼이민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결혼이민자 가족의 건강성을 유지하는데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한국어교육, 가족상담, 가족문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② 다문화가족지원센터(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2006년 3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설립되었으며 2007년 7월 40개소를 시작으로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2008년 9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08년 12월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80개가 개소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과 한국문화 적응, 가족생활적응 및 가족관계의 증진 등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여성회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지방문화원, 여성결혼이민자 및 외국인노동자 관련 활동을 추진해 온 민간단체 등 다양한 기관에서 그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교육사업과 상담사업, 자녀보호사업, 자조집단사업, 문화·정서지원사업, 유관기관 네트워크 형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핵심은 교육 사업으로 기본적으로 한국어교육과 가족교육, 문화교육, 정보화교육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개인 및 가족상담, 교육 시 자녀 보호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다.

(3) 민간지원

1) 종교단체

교회, 사찰 등에서 결혼이민자,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예로 강북구에 위치한 번동제일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번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교활동과 그들의 친교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2) 민간·사회 단체

결혼이민자와 이주여성을 지원하는 단체 전부를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이주여성을 대상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관과 자원봉사단체 중 최신일자리의 중앙일간지에 소개된 단체 두 곳만 기술하였다.

① (사)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여성인권센터는 외국인이주여성의 인권 보호와 권익 신장, 모성보호와 육아지원을 통한 생명존중,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교육과 문화 활동, 한국여성과 이주여성들의 국경을 넘는 연대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형성과 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창립되었다.

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 성산업에 유입되어 고통 받는 외국인여성의 인권피해를 상담하며 피해자를 위한 심리치료와 의료, 법률 지원을 실시하고 외국인이주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해 산전산후 조리를 위한 사업과 신생아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사업을 지원한다. 또한 쉼터를 제공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피해를 입은 외국인여성, 임산부 등이 안정된 휴식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한글교육과 문화체험, 가정폭력과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하고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회와 무료진료소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국제결혼가정이 겪

는 가족갈등과 자녀문제의 해소를 위해 국적별 모임을 지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한다. 그리고 외국인이주여성이 겪고 있는 피해와 부당한 처우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관련 홍보물을 제작, 출판한다.

② 이화여대 봉사 동아리 ‘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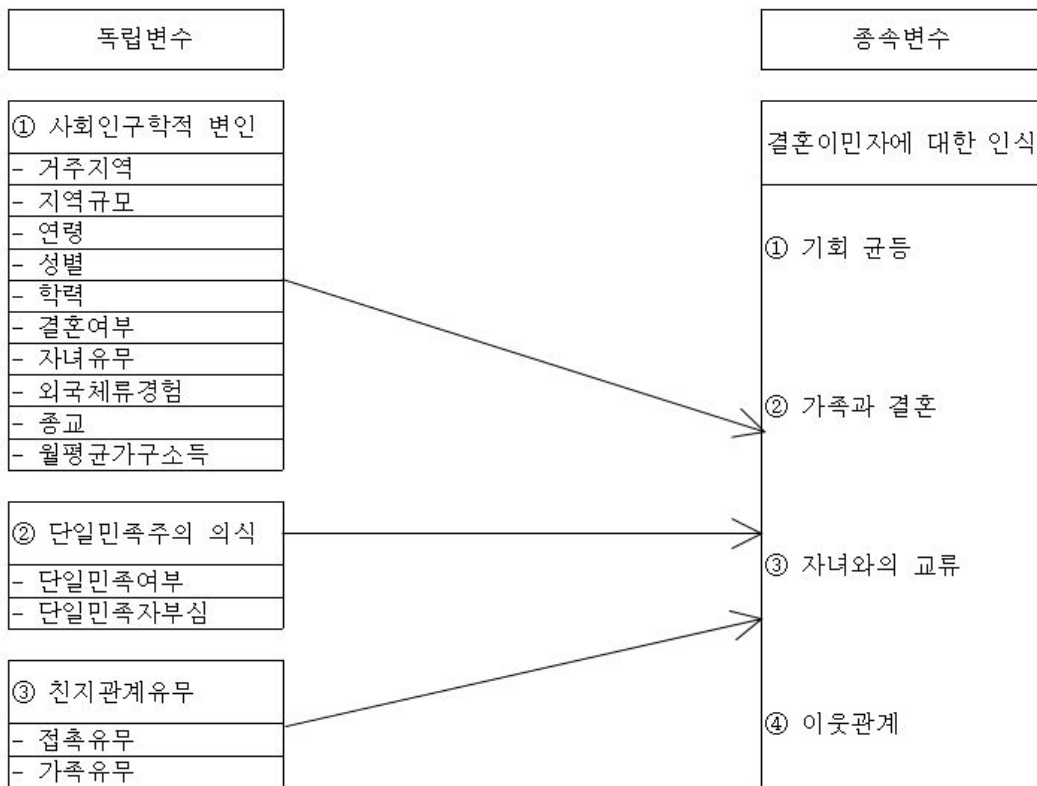
결혼이민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다정’은 이화여대 학생 8명이 2005년 학교 인트라넷에서 글을 주고받으면서 의기투합해 만들었다. 기왕이면 같은 여성, 그리고 아직 다른 봉사단체로부터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래서 선택한 게 다문화가정의 이주 여성이었다. 그렇게 시작된 ‘다정’의 회원은 지금 57명으로 늘어났으며, 현재 수도권외 다문화가정 12곳을 방문해 이주 여성 및 그들의 자녀 18명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2008.12.30, 중앙일보)

IV. 연구방법

1. 연구문제

- 1) 단일민족주의 변수에 따라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 2) 친지관계유무에 따라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 3)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 4)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느 것인가?

2. 연구모형



<그림 IV-1> 연구모형

3.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지 320부를 배포하였고 그 중에서 성실히 답변한 297부를 사용 하였으며 설문지의 배포 및 회수 기간은 2007년 12월 21일 ~ 2008년 4월 30일 사이에 실시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우편조사와 거리조사를 병행하였다.

4. 변수의 개념 및 측정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을 종속변수로 하여, 단일민족주의 의식에 관한 변수에서는 단일민족 여부와 단일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조사하였고, 친지관계유무 변수에서는 결혼이민자를 접해본 적이 있는지의 여부와, 결혼이민자가 가족이나 이웃 등 주변에 있는지 유무를 물어보았다.

그리고 사회·인구학적 변인에서는 거주 지역, 지역규모, 연령, 성별, 학력, 결혼여부, 자녀유무, 외국체류경험, 종교, 월평균소득에 따라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1) 종속변수

①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

본 연구에서 사용되어진 종속변수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의 세부 문항은 <표 IV-1>과 같다.

<표 IV-1>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

항 목		평균±표준편차	신뢰도
기회균등	① 결혼이민자와 한국인과의 균등한 기회 부여 여부	3.97 .956	X
가족과 결혼	② 자녀의 국제결혼 찬성 여부	2.96 1.125	.917
	③ 친척의 국제결혼 찬성 여부	3.16 1.053	
자녀와의 교류	④ 자녀가 결혼이민자 자녀와 어울리는 것에 대한 생각	3.62 .878	X
이웃관계	⑤ 결혼이민자가 이웃에 거주할 경우 도움을 줄 의향 여부	3.95 .841	X

평균은 5점 척도의 ‘전혀 그렇지 않다’에 5점, ‘별로 그렇지 않다’에 4점, ‘보통이다’에 3점, ‘그런 편이다’에 2점, ‘매우 그렇다’에 1점을 역코딩하여 계산하였다.

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크게 사회·인구학적 변인, 단일민족주의 변수, 친지관계유무 변수로 나뉜다.

① 사회·인구학적 변인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거주 지역, 지역규모, 연령, 성별, 학력, 결혼여부, 자녀유무, 외국체류경험, 종교, 월평균 가구소득으로 구성하였다.

거주 지역은 경기도에 1점, 서울에 2점, 기타지역에 3점을 주었다. 지역규모도 광역시에 1점, 중소도시 2점, 군/읍/면에 3점을 주었다.

연령은 20~29세에 1점, 30~39세 2점, 40~49세 3점, 50세 이상에 4점을 주었다. 성별은 남성에 0점, 여성에 1점을 주어 가변수 처리를 하였다.

교육수준은 중졸에 1점, 고졸을 2점, 대졸 이상에 3점을 주었다. 자녀유무와 외국체류경험도 있다 0점, 없다 1점을 주어 가변수 처리를 하였다.

종교는 기독교 1점, 불교 2점, 천주교 3점, 무교 4점, 기타 5점을 주었다. 월평균가구소득은 199만 원 이하는 1점, 200~399만원은 2점, 400만 원 이상은 3점을 주었다.

② 단일민족주의 변수

- 단일민족 여부
- 단일민족으로서의 자부심을 어느 정도로 느끼고 있는지 여부

③ 친지관계유무 변수

- 결혼이민자를 접해본 적이 있는지 유무
- 결혼이민자가 친지관계에 있는지 유무

3) 측정도구

결혼이민자의 인식에 대한 측정도구는 현재 이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표준화된 측정도구가 없었으나 2007년 8월 여성가족부와 국정홍보처에서 발간한 국제결혼이민자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의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독립변수로 인구통계학적 변수, 친지관계유무 변수의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였고 매개변수 단일민족주의 변수로 하였다. 종속변수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으로 결혼이민자에 대한 일반적 인식, 다른 민족과의 결혼과 가족으로 받아들임, 결혼이민자를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는지 여부로 구분하였다. 또한 정책적 함의를 알아보기 위하여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가의 정책의 필요성에 관한 문항을 구성하였다.

<표 IV-2> 설문 문항 구성

	항 목	문항수
결혼이민자 친지관계유무	주변 인간관계의 결혼이민자 유무 결혼이민자 경험유무, 결혼이민자에 대한 거부감	5
단일민족주의	단일민족, 혈통과 혈연, 국제결혼, 미래사회의 결혼이민자 증가	4
사회구성원으로 인정	차별, 귀화, 인종, 거주, 결혼이민자 차별의 이유 결혼이민자 자녀의 학교 및 또래집단에서의 적응	7
복지 및 지원정책	교육의 기회, 취업의 기회, 경제적 지원 결혼이민자 취업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사회적응 프로그램 직원채용 민간단체와 정부의 노력, 개선사항	8
일반적 사항	성, 나이, 종교, 직업, 교육정도, 월평균가구소득 등	11

5.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뢰도분석, 기술통계, 빈도분석, 일원분산분석(ANOVA), Duncan's multiple range test,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와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평균값과 표준편차, 빈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독립변수(단일민족주의 변수)에 따라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정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셋째, 독립변수(접촉여부·가족여부 변수)에 따라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정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넷째, 결혼이민자에 인식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먼저 조사응답자는 총 297명으로 응답한 사람의 성별은 남성이 36.4%였고 여성이 63.6%이었다.

응답자의 거주 지역은 서울 61.6%, 경기 35.0%, 기타 지역이 3.4%이고 지역규모는 광역시가 64.0%, 중소도시 34.7%, 군/읍/면 지역이 1.3%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연령분포는 30세 미만이 49.2%, 40세 미만이 23.6%, 50세 미만이 15.5%, 50세 이상이 11.8%로 나타나 30세 미만의 젊은 연령층이 응답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응답자의 종교를 살펴보면 무교가 41.4%, 기독교가 33.3%, 불교가 12.5%, 천주교가 7.7%로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종교를 가지고 있음이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교육정도를 보면 중졸 이하가 8.1%, 고졸 이하 52.2%, 대졸 이상이 39.7%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거의 대부분이 고등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응답자 중 기혼인 응답자가 42.1%를 차지하였고, 미혼인 응답자는 57.9%였으며, 자녀의 유무에 대한 조사에서는 34.7%가 자녀가 있었으며, 65.3%가 자녀가 없었다.

외국체류경험에서는 27.6%만 외국체류경험이 있었으며 72.4%가 외국체류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월평균 소득은 199만 원 이하가 52.5%, 200~399만원은 29.3%, 400만 원 이상은 18.5%로 나타났다.

위에서 설명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표는 다음 페이지의 <표 V-1>과 같다.

<표 V-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 297(100.0)

변인	구분	빈도	%	평균	표준편차
거주 지역	경기	104	35.0	1.68	.534
	서울	183	61.6		
	기타	10	3.4		
지역규모	광역시	190	64.0	1.37	.512
	중소도시	103	34.7		
	군/읍/면	4	1.3		
연령	20~29세	146	49.2	33.14	10.961
	30~39세	70	23.6		
	40~49세	46	15.5		
	50세 이상	35	11.8		
성별	남	108	36.4	1.64	.482
	여	189	63.6		
학력	중졸	24	8.1	2.32	.616
	고졸	155	52.2		
	대졸 이상	118	39.7		
결혼여부	기혼	125	42.1	1.58	.495
	미혼	172	57.9		
자녀유무	유	103	34.7	1.65	.477
	무	194	65.3		
외국체류경험	유	82	27.6	1.72	.448
	무	215	72.4		
종교	기독교	99	33.3	2.72	1.416
	불교	37	12.5		
	천주교	23	7.7		
	무교	123	41.4		
	기타	15	5.1		
월평균소득	0~199만원	155	52.2	283.2	2.668
	200~399만원	87	29.3		
	400만 원 이상	55	18.5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

<표 V-2>는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V-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의 차이

(N=297)

구분		빈도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			
			기회균등	가족과 결혼	자녀와의교류	이웃관계
거주지역	경기	104	3.82	2.90	3.53	3.77
	서울	183	4.05	3.16	3.66	4.05
	기타지역	10	4.10	3.00	3.70	4.10
	F값		2.060	1.401	.799	3.908*
지역규모	광역시	190	4.07	3.16	3.68	4.08
	중소도시	103	3.80	2.91	3.52	3.74
	군/읍/면	4	3.50	2.00	2.75	3.25
	F값		3.355*	3.929	3.125	7.386***
연령	20 ~ 29세	146	3.95	3.00	3.62	3.90
	30 ~ 39세	70	3.96	3.10	3.61	3.94
	40 ~ 49세	46	3.85	3.05	3.63	4.07
	50세 이상	35	4.26	3.27	3.60	4.03
	F값		1.344	.355	.008	.533
성별	남	108	4.16	3.06	3.52	3.88
	여	189	3.86	3.07	3.67	3.99
	F값		6.663**	.221	2.106	1.288
학력	중졸	24	4.04	3.50	3.67	4.08
	고졸	155	3.99	2.85	3.57	3.91
	대졸이상	118	3.93	3.00	3.66	3.98
	F값		.183	3.621*	.369	.568
결혼여부	기혼	125	4.02	3.21	3.70	3.98
	미혼	172	3.94	2.78	3.55	3.94
	F값		.505	10.572***	2.168	.163
자녀유무	유	103	3.96	3.19	3.68	3.98
	무	194	3.97	2.84	3.58	3.94
	F값		.013	6.791**	.823	.171

연령	유	82	3.94	3.17	3.71	3.98
	무	215	3.98	3.02	3.58	3.94
		F값		.116	1.309	1.222
종교	기독교	99	4.07	3.05	3.74	3.98
	불교	37	3.92	3.02	3.54	4.00
	천주교	23	3.78	2.76	3.43	4.00
	무교	125	3.92	3.11	3.56	3.89
	기타	15	4.13	3.26	3.73	4.13
			F값		.717	.668
월평균가구소득	199만 원 이하	155	3.95	3.03	3.75	4.08
	200~399만원	87	4.06	3.12	3.56	3.83
	400만 원 이상	55	3.89	3.03	3.31	3.80
			F값		.590	.232

*p<0.05, **p<0.01, ***p<0.001

- D : Duncan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 <표 V-2>에서 제시된 변수들 중 거주지역, 지역규모, 연령, 성별, 결혼여부에 따라 결혼이민자의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거주지역에 따라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 중 결혼이민자와의 이웃관계에 대한 질문으로 결혼이민자가 이웃에 있을 경우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의 F값이 3.908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지역규모에 따라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 중 결혼이민자에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광역시의 평균이 4.07점으로 중소도시와 군/읍/면의 지역보다 동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F값도 3.35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앞서 살펴본 결혼이민자 현황에서 보면 광역시에서의 결혼이민자의 결혼건수가 270,980건으로 전체 345,592건의 78.4%를 차지하는데 이는 광역시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이 결혼이민자를 중소도시나 군/읍/면보다 더 많이 접하여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

인 것으로 해석된다. 결혼이민자와의 이웃관계에 대한 질문으로 결혼이민자가 이웃에 있을 경우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F값이 7.38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에 따라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를 하였으나 본 조사에서는 연령과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은 결혼이민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남성의 평균이 각각 4.16점으로 결혼이민자에 동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답하였으며 F값은 6.66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학력에 따른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에서 가족과 친지의 국제결혼에 대한 질문에 학력이 낮을수록 가족과 친지의 국제결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였으며 F값은 3.62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응답자 중 기혼 집단에서 평균 3.21점으로 자녀와 친척이 국제결혼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으며 F값은 10.572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응답자 중 자녀가 있는 집단에서 평균 3.19점으로 자녀와 친척이 국제결혼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으며 F값은 6.79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응답자의 외국체류경험에 따라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를 하였으나 본 조사에서는 외국체류경험과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응답자의 종교에 따라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를 하였으나 본 조사에서는 종교와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응답자의 월평균가구소득에 따라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지 조사한 결과 월평균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응답자의 자녀와 결혼이민자의 자녀가 어울리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였으며 F값이 5.624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3. 단일민족주의 변수에 따른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

<표 V-3>는 단일민족주의 변수에 따른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V-3> 단일민족주의 변수에 따른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의 차이

(N=297)

구분		빈도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			
			기회균등 평균	가족과 결혼 평균	자녀와의교류 평균	이웃관계 평균
단일민족	그렇다	162	3.86	2.49	3.56	3.93
	아니다	135	4.10	3.15	3.69	3.98
F값			4.387*	1.791	1.702	.217
단일민족		297	3.97	3.05	3.62	3.65
자부심	상관계수		-.192**	-.132**	-.152**	-.141*

*p<0.05, **p<0.01

- D : Duncan

단일민족 여부에 대한 질문 중 결혼이민자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지를 묻는 단일민족이 아니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결혼이민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답변한 집단이 F값이 4.387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단일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결혼이민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하여 F값이 -.192로 단일민족 자부심이 낮을수록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이 다른 민족과의 결혼, 곧 국제결혼을 할 경우에 F값이 -.132로 단일민족 자부심이 낮을수록 가족의 국제결혼을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자녀와 결혼이민자의 자녀가 어울리는 것에 대한 물음에 F값이 -.152로 단일민족 자부심이 낮은 집단이 자녀와의 교류에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결혼이민자가 이웃에 거주할 경우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도 F값이 -.141로 단일민족 자부심이 낮은 집단이 결혼이민자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는 답변을 하였다.

4. 친지관계유무에 따른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

<표 V-4>는 친지관계유무 변수에 따른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V-4> 친지관계유무에 따른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의 차이

(N=297)

구분		빈도	기회균등	가족과 결혼	자녀와의 교류	이웃관계
			평균	평균	평균	평균
접촉유무	있다	130	4.18	3.48	3.96	4.15
	없다	137	3.87	2.86	3.45	3.86
	F값		6.785**	23.276***	23.601***	8.503**
가족유무	있다	97	4.08	3.32	3.81	4.12
	없다	200	3.88	2.85	3.47	3.82
	F값		3.365	14.332***	11.385***	9.752**

p<0.01, *p<0.001

① 결혼이민자의 접촉유무 따른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의 차이

결혼이민자를 접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평균 4.18점으로 결혼이민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답하였으며 F값은 6.78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결혼이민자를 접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평균 3.48점으로 자녀와 친척이 다른 민족과 결혼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였고 F값은 23.27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결혼이민자의 자녀와 응답자의 자녀가 어울리는 것에 대한 것도 평균 3.96점으로 결혼이민자를 접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였으며 마찬가지로 평균 4.15점으로 결혼이민자가 이웃에 거주할 경우 도움을 준다고 답하였다. 각각의 F값은 23.601과 8.50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② 결혼이민자 가족유무에 따른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의 차이

결혼이민자가 가족인 경우 응답자의 자녀와 친척도 다른 민족과 결혼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고 F값은 14.332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결혼이민자의 자녀와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였으며, 결혼이민자가 이웃에 거주할 경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답하였다. 각각의 F값은 11.385와 9.752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5.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에 대한 변인들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아래와 같다.

종속변수는 기회균등, 가족과 결혼, 자녀와의 교류, 이웃관계이다. 사회·인구학적변인에서는 지역규모, 연령, 학력, 결혼여부, 자녀유무, 외국체류경험, 종교, 월평균가구소득을 넣었고 단일민족주의 변인에서는 단일민족자부심, 친지관계유무 변인에서는 가족유무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였다. 독립변수 선정에 있어 단일민족 변인과 접촉유무 변인, 그리고 거주지역, 성별 변인은 서로 상관관계가 높아 다중공선성상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단일민족 변인과 접촉유무 변인, 그리고 거주지역, 성별 변인을 뺀 나머지 변인을 회귀모형의 독립변수로 넣었다.

1) 기회균등

<표 V-5> 기회균등에 대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N=297)

독립변인	종속변인	기회균등	
		b	β
지역규모		-.280	-.150**
연령		.050	.055
학력		-.014	-.009
결혼여부		-.112	-.058
자녀유무		.262	.130
외국체류경험		.145	.068
종교		-.053	-.078
월평균가구소득		.007	.006
단일민족자부심		-.173	-.186***
가족유무		-.330	-.162*
상수		4.980	

F-value	2.978***
R^2	.094
Adj- R^2	.063

*p<0.05, **p<0.01, ***p<0.001

결혼이민자의 기회균등에는 지역규모와 단일민족자부심, 그리고 가족유무가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결혼이민자의 기회균등에 지역규모가 커질수록 단일민족자부심이 낮을수록 그리고 결혼이민자가 가족일수록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인과 균등한 기회를 주어야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가족과 결혼

<표 V-6> 가족과 결혼에 대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N=297)

독립변인	종속변인	기회균등	
		b	β
지역규모		-.329	-.150**
연령		-.082	-.076
학력		-.011	-.006
결혼여부		-.254	-.112
자녀유무		-.099	-.042
외국체류경험		.099	.039
종교		.005	.006
월평균가구소득		.009	.006
단일민족자부심		-.201	-.183***
가족유무		-.607	-.253***
상수		4.747	

F-value	4.843***
R^2	.145
Adj- R^2	.115

p<0.01, *p<0.001

결혼이민자의 가족과 결혼변수에도 기회균등과 마찬가지로 지역규모와 단일민족자부심, 그리고 가족유무가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결혼이민자의 가족과 결혼변수에 지역규모가 커질수록 단일민족자부심이 낮을수록 그리고 결혼이민자가 가족일수록 자녀가 국제결혼을 하는 것과 친지가 국제결혼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경향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자녀와의 교류

<표 V-7> 자녀와의 교류에 대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N=297)

독립변인	종속변인	기회균등	
		b	β
지역규모		-.243	-.142*
연령		-.107	-.129
학력		.089	.063
결혼여부		-.176	-.099
자녀유무		-.010	-.006
외국체류경험		.029	.015
종교		-.045	-.072
월평균가구소득		-.203	-.178**
단일민족자부심		-.128	-.150**
가족유무		-.494	-.264***
상수		5.230	

F-value	5.474***
R^2	.161
Adj- R^2	.131

*p<0.05, **p<0.01, ***p<0.001

결혼이민자의 자녀와의 교류변수에는 기회균등과 마찬가지로 지역규모와 단일민족자부심, 가족유무 그리고 월평균가구소득변인이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결혼이민자의 가족과 결혼변수에 지역규모가 커질수록 단일민족자부심이 낮을수록 결혼이민자가 가족일수록 그리고 월평균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자신의 자녀와 결혼이민자의 자녀가 교류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경향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4) 이웃관계

<표 V-8> 이웃관계에 대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N=297)

독립변인	종속변인	기회균등	
		b	β
지역규모		-.373	-.227***
연령		.050	.063
학력		.072	.053
결혼여부		.085	.050
자녀유무		-.005	-.003
외국체류경험		.047	.025
종교		-.041	-.069
월평균가구소득		-.146	-.134*
단일민족자부심		-.110	-.134*
가족유무		-.287	-.161*
상수		5.014	

F-value	3.875***
R^2	.119
Adj- R^2	.089

*p<0.05, **p<0.01, ***p<0.001

결혼이민자의 이웃관계변수에도 자녀와의 교류변수와 마찬가지로 지역규모와 단일민족자부심, 가족유무 그리고 월평균가구소득변인이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결혼이민자의 가족과 결혼변수에 지역규모가 커질수록 단일민족자부심이 낮을수록 결혼이민자가 가족일수록 그리고 월평균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결혼이민자가 이웃으로 있을 경우 도움을 주고자하는 경향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결국 결혼이민자의 인식에 중요한 영향변인으로 사회·인구학적변인으로는 지역규모와 월평균가구소득변인이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단일민족자부심이 낮을수록 결혼이민자가 가족일수록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영향력이 큰 변수임이 강조되었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내에서 국제결혼으로 정착하게 된 결혼이민자들에 대하여 우리사회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연구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해마다 결혼이민자와 결혼을 하는 한국인들의 수치는 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저출산·고령화에 의하여 그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내에서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되었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에 대한 결과로 결혼이민자가 이웃에 거주할 경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질문에 서울과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며 지역규모가 큰 광역시에 거주하는 응답자도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학력이 아주 낮거나 아주 높을수록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조사되었다.

기혼자일수록 결혼이민자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자녀가 있는 응답자일수록 결혼이민자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였다. 월평균가구소득에서는 소득이 낮은 집단일수록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었다. 이는 여성부나 보건복지가족부의 연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결혼이민자와 결혼하거나 주위 친지들이 결혼이민자와 결혼을 하는 사람일수록 월평균 소득과 학력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설동훈 외, 2005)이기에 이들의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응답자는 한국인이 단일민족이 아니라고 답한 응답자가 결혼이민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였으며 단일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고

단일민족 특성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답한 응답자들이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를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단일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낮을수록, 결혼이민자 자녀와 응답자의 자녀가 어울리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였으며, 결혼이민자가 이웃에 거주할 경우 도움을 주겠다고 답하였다.

셋째, 결혼이민자를 접한 경험과 결혼이민자를 가족으로 두고 있는지에 따라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결혼이민자를 접한 경험이 있고, 결혼이민자를 가족으로 두고 있는 응답자가 결혼이민자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자녀 및 친척이 다른 민족과의 결혼을 하는데 긍정적으로 답을 하였으며, 결혼이민자를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는 지에 대한 질문에도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마지막으로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려고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역규모, 단일민족자부심, 가족유무 변인이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규모가 클수록, 단일민족자부심이 낮을수록 그리고 결혼이민자가 가족인 경우일수록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국제화 시대에 국제결혼가정의 증가로 다민족·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사회의 구성원으로 등장한 결혼이민자와 함께 어울리고 공존할 수 있도록 일반인의 인식이 어떠한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에서도 나왔듯 단일민족주의 개념이 결혼이민자의 인식에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민족이라는 관념이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하나의 고정관념처럼 생각되어져 왔으며 단일민족이라는 의식을 부인하거나 부정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론적 배경에서도 살펴 보았듯이 우리나라가 혈통적으로 단일민족이 아니라 일제의 침략과 국가가 정책적으로 사용한 하나의 관념일 뿐이었다. 앞으로 우리는 단일민족주의를 어떻게 해소시키는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고정관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따라 국제화시대를 살아가는데 있어 다른 민족을 받아들이는 성숙한 자세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단일민족주의로 인한 고정관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반인들의 다문화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다문화 사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하나의 고정관념으로 굳어져버린 사고는 쉽게 깨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깨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인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앞에서 말한 대로 일반인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한 장소도 필요할 것이다. 정부의 2009년 예산을 보면 일반인에 대한 다문화 교육에 투여되는 예산보다 결혼이민자나 그 가족의 직접적으로 투입이 되는 예산이 훨씬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들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일반인이 그들에 대하여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단일민족이라는 고정관념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에 일반인들의 교육을 위한 투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의 가족정책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80개소로 2009년에는 110개소, 2010년에는 140개소로 늘릴 예정으로 되어있다. 먼저 명칭에서 다문화가족으로 규정지어버려서 다문화가족만이 이용할 수 있다는 선입견이 생길 수 있다. 현재 전국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업도 실시하고 있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기본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대상은 일반 한국인이다. 일반인들의 접근성

이 좋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문화에 대한 일반인의 교육을 실시한다면 단일민족의식을 해소시키는데 있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결혼이민자의 증가와 함께 같이 증가하게 될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그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발 빠른 정책마련이 시급할 것이다. 또한 그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기 위해서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는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우리사회에 동화가 아닌 그들의 다양함과 우리와의 차이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낙오자가 아닌 한국 사회의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이들과 한국인과의 자녀가 잘 자란다면 차후 한국의 국가경쟁력에도 큰 도움일 될 뿐만 아니라 국제화시대를 살아가는데 큰 원동력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가산종합사회복지관(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지와 사회참여를 중심으로.

강순정(2008),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지지와 결혼만족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지영(2006), 한국인의 의식과 혼혈인의 삶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국정홍보처·여성가족부(2007), 국제결혼이민자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여성가족부.

구지은(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교재 개발방안 : 부산·경남
지역중심으로,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유경(2007), 결혼이민자 가정의 호혜적 기대의 일치와 불일치 연구-한국
남성과 결혼한 필리핀 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갑현(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나영(2007),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사회적 지지와
사회참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미혜(1983), 혼혈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민영(2008), 여성결혼이민자 적응지원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보라(2007), 국제결혼 이민실태와 이민자 여성의 한국사회 적응 - 경기도
남양주시 사례,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안나(2008), 여성결혼이민자 가정환경변인과 유아기 자녀들의 언어능력과의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양희(2007), 남성 결혼이민자의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란(2006), 한국사회에서 이주여성의 삶과 사회문화적 적응관련 정책.

김오남(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가족과 문화 18권 3호.

김이선 등(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김이선 등(2007),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I) : 한국사회의 수용 현실과 정책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인철(2008),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재련(2007),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의 지위,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종란(2008),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이용경향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진욱(2007), 국제결혼가정 언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농촌지역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2007년도 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2), 159~176.

김현숙(2008),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현숙(2008), 결혼이주여성의 사회통합 유형에 관한 연구 :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혜련(2007), 다문화사회에서의 모성적 사유와 가족윤리, 젠더리뷰.

노하나(2007), 중국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문화적응유형과 이주여성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류상태(2006), '단일민족 콤플렉스' 를 넘어서 : 혼혈자를 향한 한국사회의 윤리적 고찰, 철학과 현실 통권70호 (2006 가을), pp.97-103, 철학문화연구소.

문순영(2007), 현행법(안)을 통해 본 국제결혼 여성이주민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여성연구.

문은희(2007),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과 여가 참여에 관한 연구 :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경동(2007), 다문화가족 형성과 갈등에 대한 연구-한국의 광주·전남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미경(2007), 교사를 통해 본 다문화가정 유아의 특성 및 교사의 어려움 : 결혼이민자가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수미·정기선(2004), 사회적소수자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회 후반기 학술대회, 한국사회학회.

박종보·조용만(2006), 다문화가족지원법 마련을 위한 연구, 여성가족부.

박종삼(1982), 한미국제결혼에서 문화적 배경의 차이로 인한 의사전달 갈등의 이론적 고찰, 논문집 Vol.12 No1, 숭실대학교.

박지영(2008),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호성(1997), 남북한 민족주의에 관한 비교연구 -한반도 민족주의를 위하여-, 한국학술진흥재단.

방신영(2005), 결혼이민자 가족의 문제와 지원 방안,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변선영(2008), 코시안에 대한 개방성과 고정관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배정화(2008), 여성 결혼이민자 대상 과제 단위 요구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제명(2008), 경북지역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실태와 정착방안,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혁(2007), 다문화 가정의 현황 및 한국어교육 지원방안. 인간연구, 제12호: pp.57-92,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설동훈(1999),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설동훈(2000), 노동력의 국제이동. 서울대학교출판부.

설동훈(2005), 이민과 다문화사회의 도래, 김영기 편, 한국사회론, pp. 3-23, 전북대학교출판부.

설동훈 외(2005),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설동훈 외(2006),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설동훈(2006), 국민 민족 인종 : 결혼이민자 자녀의 정체성, 동북아다문화시대 한국사회의 변화와 통합, 동북아시아위원회 · 한국사회학회.

설동훈 · 윤홍식(2008), 국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과 사회복지정책, 한국사회복지학회.

설동훈 · 윤홍식(2008),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복지정책의 과제: 출신국가와 거주 지역에 따른 상이성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제24권 제2호.

성지혜(1996), 중국교포여성과 한국남성간의 결혼연구,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송복희(2008),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및 가정생활교육 효과 : 익산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성자(1974), 국제결혼에 있어서의 부부갈등 : 미팔균 정신 위생과에

의뢰해온 미국 군인 배우자를 가진 한국여성을 중심으로 한 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경희(2008), 농촌의 결혼이민자 가정교육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혜옥(2006), 국제결혼 여성 가정에 대한 연구-중국, 필리핀, 베트남 여성을
중심으로-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순미(2006),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부부의 적응지원 정책 개발, 한국지역
사회생활과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양애경 외(2007),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사회 수용성 연구, 한국여성정
책연구원.

양옥경·김연수(2007), 서울거주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Vol.26

엄한진(2006), 전지구적 맥락에서 본 한국의 다문화주의 이민논의, 한국사회학
회.

양혜우(2005), 여성의 이주화와 국제결혼,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염미경·김규리(2008), 제주사회의 여성결혼이민자들: 선택과 딜레마, 그리고
적응, 도서출판 선인.

오경석 등(2007),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한울아카데미.

오계택(2007),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일터를 중심으로, 한국노동
연구원.

왕한석(2006),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언어적응의 제 양상, 한국사회언어학회
· 담화 인지언어학회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왕한석·한건수·양명희 공저(2005),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언어 및 문화적응
실태 연구: 전라북도 임실군(및 순창군·남원시)일원 사례 보고서, 국립국어
원.

유영은(2007),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문화적응에 관한 사례연구와 지원방안:

경기도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정숙·임유경(2004), 성별화된 이주방식으로서의 국제결혼과 여성에 대한 폭력: 필리핀 여성과 한국남성의 결혼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창립 20주년 추계학술대회자료집. 한국여성학회.

윤형숙(2004), 외국인 출신 농촌주부들의 갈등과 적응 :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2004년도 한국여성학회 10월 심포지움 자료집, 한국여성학회.

윤형숙(2004), 국제결혼 배우자의 갈등과 적응, 최협·김정국·정근식·우형기 편, 한국의 소수자, 실패와 전망, 서울: 한울.

이금연(2001), 국내여성이주노동자의 차별실태와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삼식 등(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결혼·출산형태와 정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선주 등(2007), 세계화와 아시아에서의 여성 이주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이성원·최유(2006), 「다문화가정 도래에 따른」 혼혈인 및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제지원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이순태(2007),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외국인의 출입국 및 거주에 관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이영선(2008), 결혼이민자의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수도권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은주(2007), 결혼이민여성 부부집단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에 관한 이론적 연구-필리핀 여성 부부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제19집 1호.

이지혜(2007), 여성 결혼이민자의 부부관계만족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진숙(2007),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및 활용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혜경(2005), 혼인이주와 혼인이주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 제28권 제1호, 한국인구학회.

임경혜(2004), 국제결혼사례별로 나타난 가족문제에 따른 사회복지적 대책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소현(2008), 자아존중감이 타민족·문화의 수용에 미치는 영향 : 동남아시아인 및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지현(1999),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신화와 허무의 민족주의 담론을 넘어서, 조합공동체 소나무.

장문주(2008), 미용사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조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은정(2007), 국제 결혼한 한국 남성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장지혜(2007),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자본과 생활 만족도,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만길(2005), 외국인 주부 한국생활 실태 조사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수현(2002), 필리핀 노동자와 결혼한 한국 여성의 주변적 지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진희(2007), 국제인권법상 이주여성의 보호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기선 외(2007), 경기도내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실태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재)경기도여성가족개발원.

정영훈(2001), 단일민족의식의 위기, 정신문화연구.

정혜실(2007), 파키스탄 이주노동자와 결혼한 한국여성의 주체성에 관한 연구-파키스탄 커플모임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성원(2000), 외국인노동자와 노동계층 한국여성의 결혼사례를 통해 알아본 새로운 마이너리티의 형성 및 재생산,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주영애(2008), 이주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대책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강민(2006), 단일민족의 신화와 혼혈인, 어문론집.

최경숙(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지지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금혜(2007), 조선족 여성들의 결혼생활 적응유형에 관한 질적 연구.

조옥라 외(2006), 다문화 개방사회를 위한 사회정책 연구, 대통령자문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최인숙(2008), 단일 주제사용언어 교수법의 한국어 교재개발을 위한 다각적 분석: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정아(2008), 결혼이민자 가정의 가정환경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현(2008), 한국체류 중국동포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건수(2006),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회.

한국염(2004), 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에 대한 여성 사회학적 분석, 이주여성인권센터 3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염(2007), 이주여성, 그들은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주민이다, 참여정부 4년 여성정책 평가토론회 자료집, 이주여성인권센터.

한혜원(2001), 혼혈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허평화(2007), 천안지역 국제 혼인 이주여성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기원(2006), 다문화정책의 방향과 문화적 지원방안연구, KCTPI.

홍기혜(2000), 중국 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간의 결혼을 통해 본 이주의
성별 정치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상희(2008),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언론의 보도행태 분석,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소연(2007), 여성결혼이주자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윤주(2008), 결혼이민자 여성 농촌지역 유입과 '적응' 경험, 숙명여자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황정미 등(2007),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여
성정책연구원.

황정미(2007), 다문화사회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와 인종적 배제주의, 한국여
성정책연구원.

[국외문헌]

Gudykunst, W. B. (1998). Bridging Differences: Effective Intergroup
Communication. 3r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Liebkind, K. (2000). "Acculturation." in R. Brown and S. Gaertner. eds.
Blackwell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4: 386-404. Oxford:
Blackwell.

Nesdale, D. and Todd, P. (2000). "Effect of Contact on Intercultural
Acceptance: A Field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4:341-360.

EUMC, Majorities' Attitudes Toward Minorities: Key findings from the
Eurobarometer and the European Social Survey - Summary,

<http://eumc.eu.int> , 2005.

Marco Martiniello, 윤진 역(2002),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한울.

[기타]

2006년 혼인통계 결과, 통계청, 2007.

2007년 혼인통계 결과, 통계청, 2008.

2008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결과(2008), 행정안전부.

가족정책 관련 통계자료(2007), 여성가족부.

경기전문여성네트워크, 제2회 정책포럼자료집(2007), 다문화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포럼, (재)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다문화가족백서(2007), 평택대학교다문화가족센터.

다민족 사회 코리아리포트, 세계일보, 2007 4월 24일자 기사.

다민족·다문화사회를 향한 한국사회의 도전과 전망 국제 세미나
자료집(2007), 한국여성 정책연구원.

동북아 “다문화”시대 한국사회의 변화와 통합(2006), 한국사회학회.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설명회 자료(2008), 법무부(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2004). 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최종보고서(2007), 동북아시아위원회.

한국가정관리학회 2006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2006), 결혼이민자 가족 :
다양성과 공존을 향하여.

허황옥 루트 인도에서 가야까지(2008), 김병모, 역사의 아침.

ABSTRACT

Study regarding social recognition of a marriage immigrants.

Jung, Hye eun

Dept. of Family Culture & Consumer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As the number of marriage migrant families has drastically increased due to international marriage recently, Korea is rapidly becoming a multi-cultural society. However, insufficient are social recognition of and support for problems that marriage migrants and their children face due to the special circumstances adverse to their settlement. Further, there is almost none research on social recognition of them has been done. Thus, 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how the Korean society recognizes marriage migrants who try to settle down in Korea after international marriage, and to provide them with needed help.

According to an analysis of the current condition of foreign residents in 2008, conducted by Ministry of Administration and Safety, foreign residents in May, 2008 accounted for 1.8% (891,341 individuals) of the registered population, and showed 23.3% increase compared to that of 2007 (722,686 individuals), which indicated the rapid change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2008 .07, Ministry of Administration and Safety).

However, as it has been only around 10 years since international marriage became a social issue, and focus was only on marriage migrants, how Koreans and Korean society would accept such a new change was relatively out of sight (Jeongmi Hwang et al. 2007), and research on social recognition of marriage migrants was not sufficient compared to the new social change.

Therefore, 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how common people recognizes marriage migrants depending on whether they see marriage migrants

around them or in their families, and to examine to what extent establishment of policies in this respect is needed. As for the subject, 297 adult men and women aged 20 or more residing in Seoul and the metropolitan area were selected and a survey was conducted to them. To the responding data, frequency analysis, percentage analysis, analysis of variance (one-way ANOVA),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implemented; and SPSS PC Program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Win Ver. 12.0) was adopted to analyze the data.

Major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o the question regarding the effects of socio-demographic variables on recognition of marriage migrants, the respondents in Seoul and other regions gave positive answers that they would help marriage migrants when asked, and so did the respondents in metropolitan cities. As the level of education was very low or high, recognition of marriage migrants was comparatively positive.

It turned out that married respondents and those with children had positive recognition of marriage migrants. Regarding monthly income, as it was lower, recognition of marriage migrants was positive.

As shown in the research results of Ministry of Women and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ose who got married with a foreign migrant or whose relatives got married with one had positive recognition since the income and level of education of most of them are low (Donghun Seol et al. 2005).

Second, the respondents who said that Korea was not a homogeneous country had positive recognition of marriage migrants; and those who did not have pride of being part of a homogeneous country or said that there was no need to insist to be homogeneous people had positive recognition as well.

To the question regarding whether they would accept marriage migrants as a member of the society, those who had little self-esteem as

homogeneous people answered positively about having their children make friends with children of marriage migrants. Besides, they said that they would help marriage migrants in their neighborhood.

Third, as for the difference in recognition of marriage migrants according to experiences to meet marriage migrants and having them in their families, those who met marriage migrants and had any marriage migrant in the family have positive recognition and response to marriage of their child or relative with people from another nation. Besides, they

answered positively when asked if they accepted marriage migrants as a member of the society.

Lastly,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clarify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s on recognition of marriage migrants; and it turned out that the scale of the region, pride as homogeneous people, and whether to have family members from another nation were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in this respect.

It turned out that as the region in which respondents lived was small, pride as homogeneous people was low, and they had family member who was from another nation, their recognition of marriage migrants in the society was affected in a positive way.

Our society should present the way to live together with them, learn from them, and accept their variety and difference. As they live as members of Korean society with help from the society so that they would not fall behind, and their children are well brought up among

Korean children, this will be of great help in terms of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be a dynamic energy for Korea to survive the age of globalization.

문4. 결혼이민자가 한국 사회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외모에서 차이가 오는 거부감 ② 낮은 교육수준
- ③ 경제적 어려움 ④ 신분상의 불이익
- ⑤ 사회적 편견 ⑥ 취업 문제
- ⑦ 기타

문5. 결혼이민자의 자녀가 학교생활과 또래집단에 적응하는데 한국인과 남다른 외모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 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그렇지 않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문6. 한국사회에서 결혼이민자에 대한 차별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없다. (문 8번으로) ② 거의 없다.
-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있다.
- ⑤ 많이 있다.

문7. 결혼이민자가 한국 사회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시는 항목을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외모에서 차이가 오는 거부감 ② 낮은 교육수준
- ③ 경제적 어려움 ④ 신분상의 불이익
- ⑤ 사회적 편견 ⑥ 취업 문제
- ⑦ 기타

문8. 결혼이민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언어장벽 ② 문화적 차이

문13. 귀하의 자녀가 결혼이민자의 자녀와 어울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① 적극적으로 어울리게 하겠다. ② 어울리게 하겠다.
- ③ 어울리든 안 어울리든 상관없다. ④ 어울리지 못하게 하겠다.
- ⑤ 절대 어울리지 못하게 하겠다.

문14. 귀하께서는 결혼이민자가 이웃에 거주할 경우, 사회적응을 위해 도움을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그렇지 않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문15. 가족을 제외하고 결혼이민자가족 한국정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원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중앙정부 ② 지방자치단체
- ③ 각종 지원 단체(건강가정지원센터, 결혼이민자지원센터 등)
- ④ 이웃 ⑤ 기타의견_____

문16.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문 16-1번으로) ② 없다.(문 17번으로)

문16-1.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결혼이민자 가족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한국생활에 적응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② 한국생활에 적응하는데 있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③ 한국생활에 적응하는데 있어 보통이다.
- ④ 한국생활에 적응하는데 있어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 ⑤ 한국생활에 적응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문17. 귀하께서는 결혼이민자가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탈법 중개방지 등 법적정책 ② 조기정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
- ③ 사회적 편견해소 정책 ④ 경제, 의료, 양육 등 생활안정 정책
- ⑤ 자녀에 대한 교육 및 진로 ⑥ 일자리 지원 정책
- ⑦ 기타의견_____

문18. 귀하께서는 결혼이민자 가족의 가정안정 및 사회통합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 ② 서로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국민들의 인식 전환
- ③ 가부장적 문화 개선
- ④ 도시와 농촌 간 경제적, 사회적 격차 해소
- ⑤ 결혼이민자 가정에 대한 사회, 경제적 지원 방안 강화
- ⑥ 기타의견_____

문19. 귀하께서는 ‘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긍정적이다. ② 긍정적인 편이다.
- ③ 보통이다. ④ 부정적인 편이다.
- ⑤ 매우 부정적인 편이다.

문20. 정부는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탈법적 결혼중개 방지, 사회적 인식개선 및 공무원 교육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공감한다. ② 공감하는 편이다.
-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공감하지 않는 편이다.
- ⑤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문21. 귀하께서는 우리민족이 단일민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 ② 아니다.

